

문 의	대변인실	대 변 인 정연우 행정사무관 이승윤	042-481-5027 042-481-5272
	2016년 1월 14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월 13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심판단계에서 거절결정 취소... 심판청구료 반환 등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한 심판수수료를 당사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자인권자가 등록된 디자인권을 포기하면, 이미 낸 등록료 중 ‘디자인권 등록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돌려받게 된다.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①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 (거절결정 취소시 심판청구료 반환)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 (‘16. 5. 시행 예정)

-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을 지나쳐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종전에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 가능하였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디자인권에 대하여 회복신청 가능 (‘16. 5. 시행 예정)

② 지식재산권 국제경쟁력 강화

- **(해외상표출원 지원)**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 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 (‘16. 1. 시행)
- **(Global Hit 365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지식재산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 수립 지원 (‘16. 1. 시행)

③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지원제도 확대

-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받고,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 주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개설·운영 (‘15. 12. 시행)
- **(영업비밀보호 지원)** 중소기업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유료보급 하던 ‘영업비밀보호 관리시스템’이 전액 무상으로 보급 (‘16. 7. 시행) 되며, 종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해주던 영업비밀 컨설팅을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 (‘16. 6. 시행)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개선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01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개선”



거절결정 취소시 심판청구로 반환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반복된 경우(심판 청구시 보장한 것은 제외),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 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	‘16.5.예정 심판정책과 042-481-8206
디자인권 포기시 등록료 반환	디자인 등록 후 디자인권자가 스스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 중 ‘디자인권의 포기 일자가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	‘16.5.예정 등록과 042-481-5233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디자인권 회복 요건 완화 및 신청료 인하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권이 소멸된 경우, 종전에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실시중인’을 삭제하여 모든 디자인권에 대하여 회복신청 가능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 불필요) 추가납부기간이나 보전기간을 지나쳐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3개월 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종전에는 등록료의 3배를 내야 소멸한 권리 회복	‘16.5.예정 등록과 042-481-5233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동적화상디자인 도면제출 요건 완화	동적화상디자인(동영상 형식의 화상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화상의 변화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도면번호를 기재하도록 도면 제출요건 완화 * 종전에는 동작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도면번호 기재	‘16.1.시행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353
영상구술 심리시스템 활용대상 확대	서울-대전간 당사자제심판에만 활용되던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모든 심판사건의 설명회 및 심판관 면담으로 확대	‘16.1.시행 심판정책과 042-481-5846
심판 관련 각종 통지서 안내문 정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심판관련 통지서를 분석하여 추가안내 필요사항, 불명확한 사항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쉬운 문구로 개선	‘16.3.시행 심판정책과 042-481-5918
모바일 수수료 고지 및 납부 서비스	특허 수수료 정보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아보고 모바일 지로(GIRO)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 개시	‘16.1.시행 정보개발과 042-481-5103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확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중인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수강과목을 종전 1과목에서 5과목으로 추가 개설	‘16.1.시행 교육기획과 042-601-4311



해외상표출원 지원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회(TM5)에서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출원인이 상표출원단계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	'16.1.시행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67
「Global Hit 365」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1년 365일 IP분쟁 없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16년 IP-R&D 전략지원 내 신규 사업 43개 과제	'16.1.시행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184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미활용특허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연구의 우수발명 등 총 56개 과제에 대하여 최적의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해외권리 확보 전략 수립 지원	'16.1.시행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5931
표준특허 인큐베이팅지원	표준특허전문가, 변리사, 국제표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중소·중견기업에 찾아가 R&D 방향설정, 표준안-특허 연계 설계 등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중 신규 사업 6개 과제	'16.1.시행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8499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지재권 허위표시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1670-1279) 개설·운영	'15.12.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23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보급	중소기업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유상으로 보급하던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을 전액 무료로 보급하고 운용방법 교육까지 무상 진행	'16.7.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761
영업비밀 보호컨설팅 개선	영업비밀 관리수준 분석과 진단에 머물던 영업비밀보호컨설팅 제도를 분석·진단·보완대책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	'16.6.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761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공공기관 미활용 보유특허 10개에 대한 특허분석 등을 통해 특허관리 등급을 진단하고 기관·사업별 관리·활용 전략 컨설팅	'16.1.시행 산업재산창출전략팀 042-481-5931
부정경쟁행위 조사발동요건 강화 및 규제 완화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건을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강화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일몰 규정 신설	'16.1.예정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53